# 2024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2024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31일 소방청장

# Ⅰ. 시험개요

선발예정인원: 1,683명 \* 법무, 항공 제외

u e	ᅔᆀ	공개경	쟁채용(이혀	· '공채")	7	병력경쟁채 <i>:</i>	용(이하 <i>'</i> 경채	)
시도	총계	소계	남성	여성	소계	남성	여성	양성
합계	1,683	758	693	65	925	643	228	54
중앙	51	0	0	0	51	51	0	0
서울	227	67	61	6	160	111	38	11
부산	112	57	52	5	55	39	10	6
대구	61	32	26	6	29	19	7	3
인천	54	31	25	6	23	19	4	0
광주	59	34	32	2	25	14	11	0
대전	43	15	14	1	28	22	6	0
울산	44	20	16	4	24	18	3	3
세종	11	3	3	0	8	5	2	1
경기	390	200	195	5	190	105	85	0
강원	74	37	35	2	37	27	8	2
충북	56	28	26	2	28	20	8	0
충남	118	65	60	5	53	40	11	2
전북	96	23	20	3	73	59	11	3
전남	84	34	31	3	50	32	10	8
경북	41	24	22	2	17	10	5	2
경남	88	48	42	6	40	27	5	8
제주	39	22	18	4	17	12	2	3
창원	35	18	15	3	17	13	2	2

- 1) 최종합격자는 최초 임용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다른 시도로 전보(인사교류 등)가 제한될 수 있음
- 2) 채용분야, 응시요건 및 선발예정인원은 **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학교(이하 "시도 소방본부"라 한다)**의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시험일정 변경사항은 소방청 및 119고시 (https://119qosi.kr) 누리집(이하 "119고시"라 한다)을 통하여 재공고합니다.

# □ 경채 선발예정인원

ţ	대용분야	계	중 앙	서 울	부 산	대 구	인 천	광 주	대 전	울 산	세 종	경 기	강 원	충 북	충 남	전 북	전 남	경 북	경 남	제 주	창 원
	계	925	51	160	55	29	23	25	28	24	8	190	37	28	53	73	50	17	40	17	17
건축	i			<u></u>		<u></u>	i	<u></u>		<u>i</u>		j				<u> </u>	İ		i		İ
	소방사	5			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	2										1		2			
	양성	5				2										1		2			
구급							,		,											,	
	소방사	617		125	40	17	17	20	23	10	5	150	27	14	37	50	30	11	22	8	11
	남성	414		87	30	11	13	10	18	8	4	80	21	7	27	40	20	6	17	6	9
	여성	203		38	10	6	4	10	5	2	1	70	6	7	10	10	10	5	5	2	2
구급(	(항공)			1		:	:	:		·		1			:	ï	:		!		1
	소방사	2																		2	
	남성	2																		2	
구조			Ţ	1			I					1				Ĭ	<u> </u>		:		1
	소방사	163	44	21	9	5	4			8		10	4	10	9	13	12	2	10		2
	남성	163	44	21	9	5	4			8		10	4	10	9	13	12	2	10		2
	(항공)		1							]		]				·	:				1
	소방사	2																		2	
	남성	2																		2	
	(자격)																				
	소방사	6		2															4		
	양성	6		2								<u></u>				<u></u>			4		
	관련학과				_			_	_				_	_		_					
	소방사	77		2	4	3		4	5	3	2	30	4	4	5	4	3			2	2
	남성	43				2		3	4	2	1	15	2	3	4	3				2	2
	여성 야서	25		1		1		1	1	1	1	15	2	1	1	1	2				
<b>ДВ</b> .	양성	9		2	4												3				
	정(기관사) 소방사	4		1			2										1				
	오당자 남성	3		1			2										I				
	양성	3 1		I			۷										1				
<b>수박</b>	정(항해사)	I														<u>.</u>	1				
	소방사	3		1													1				1

#II O H ol	7.11	중	서	부	대	인	광	대	울	세	경	강	충	충	전	전	경	경	제	창
채용분야	계	앙	울	산	구	천	주	전	산	종	기	원	북	남	북	남	북	남	주	원
남성	1		1																	
양성	2															1				1
심리상담					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												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	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		
소방사	4				1													2	1	
양성	4				1													2	1	
안전관리(화재조시	·)					4														
소방사	5		5																	
양성	5		5																	
자동차운전						4														
소방사	2																2			
남성	2																2			
자동차정비						4														
소방사	2		1													1				
남성	1		1																	
양성	1															1				
정보통신		·		,		,		,				,								
소방사	16		2	2					1	1		2		1	2	2		2		1
양성	16		2	2					1	1		2		1	2	2		2		1
정보통신(전산)				,		,		,		,		,		,					,	
소방사	3													1					2	
양성	3													1					2	
화학																				
소방사	14	7			1		1		2						3					
남성	12	7			1		1								3					
양성	2								2											

# ※ 중앙119구조본부 근무예정지역 선발예정인원

		수도권역	영남권역	호남권역	충청강원권역
그브	구분 총계	(수도권119특수구조대,	(영남119특수구조대,	(호남119특수구조대,	(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,
十正	<b>万</b> ៕	시흥119화학구조센터)	구미119화학구조센터,	익산119화학구조센터,	서산119화학구조센터,
			울산119화학구조센터)	여수119화학구조센터)	충주119화학구조센터)
구조	44	9	9	13	13
화학	7	1	2	2	2

## 2 시험일정

단계	시험절차	시행공고일	시험예정일	합격발표일						
원서접수	서접수 2. 19.(월) 10:00 ~ 2. 23.(금) 18:00									
1단계	필기시험	3. 14.(목) <b>3. 30.(토)</b> 4. 25								
2단계	체력시험	4. 25.(목)	4. 29.(월) ~ 5. 17.(금)	5. 23.(목)						
3단계	서류전형	서류제출 (	안내 별도 공고문 참고_ 4. 25	5.(목)						
4단계	종합적성검사	5 22 (早)	6. 1.(토)	7 10/⊒\						
4년/개	면접시험	5. 23.(목)	6. 10.(월) ~ 6. 14.(금)	7. 19.(금)						
▶ 시험단계별 세부내용 및 시험일정 변경사항 등은 119고시에서 확인										

# 3 응시자격 및 복수국적자 임용

## 가. 응시자격 등 기준일

구분	종	₽ F	응시자격 등 기준일					
	응시 결격사	유 <sup>1)</sup>	최종시험 예정일(면접시험 최종예정일) '24.6.14.(금)					
	운전면허 <sup>2)</sup>		최초시험 예정일(필기시험일) '24.3.30.(토)					
공통	취업지원, 의	사상자 등	최초시험 예정일(필기시험일) 전일 '24.3.29.(금)					
0.6	필기시험	한국사	'20. 1. 1.부터 '24. 3. 29.까지 취득한 성적표					
	대체 성적	영어	(성적 사전등록자 <sup>3년</sup> ) '21. 1. 1.부터 '24. 3. 29.까지 취득한 성적표 (성적 사전미등록자 <sup>2년</sup> ) '22. 3. 30.부터 '24. 3. 29.까지 취득한 성적표					
¬ +II	자격증 등 소	지자 가점	최종시험 예정일(면접시험 최종예정일) '24.6.14.(금)					
공채	응시연령		2024년도 기즈/프레이지 유니어려 차그)					
	응시연령		2024년도 기준(5페이지 응시연령 참고)					
경채	경력요건 자격·면허		최초시험 예정일(필기시험일) '24.3.30.(토)					
선세	경력(근무)기간 산정		최종시험 예정일(면접시험 최종예정일) '24.6.14.(금)					
	인정학과 기	간 산정	최초시험 예정일(필기시험일) '24. 3. 30.(토)					

- 1) 응시 결격사유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(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)
- 2)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응시자격 요건이 되는 운전면허·자격(증) 효력은 유효하여야 하며,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되면 응시 자격이 박탈되고 합격 결정이 취소됨
- ▶ 자격(면허)은 합격일이 아닌 발급(취득)일을 기준으로 함
- ▶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을 연기하는 경우, 응시자격 등 기준일 판단은 아래와 같음
- ① 첫 번째 시험 시행 전에는 연기ㆍ변경 후 시행되는 시험예정일 적용(추가 원서접수 없음)
- ② 첫 번째 시험 시행 후에는 당초 시험예정일 적용

#### 나, 응시 결격사유 및 복수국적자 임용

- 1)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음의 관계 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
  - 가)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
  - 나) 「소방공무원임용령」 제51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
  - 다)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  - 라) 「병역법」 제76조(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)
  - 마) 「소방공무원임용령」제15조(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)

「소방공무원임용령」제15조제4항제1호의 따른 "**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**"이란 다음의 기관을 말한다. (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제출 시 참고)

- ▶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- ▶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(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)
- ▶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, 지방공단(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)
- ▶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(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)으로 함
  - 2) 복수국적자 임용
    - 가)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3(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)
    - 나) 「공무원임용령」 제4조(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)
    - 다) 「국적법」 제11조의2제2항(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)

복수국적자는 「국적법 시행규칙」 제8조에 따른 '외국국적 포기확인서'를 교육기관 입교 전까지 시험에 응시한 시도 소방본부에 제출해야 함(복수국적자는 임용이 제한될 수 있음)

# 4 응시연령

분야별	계급	연령	생년월일
공채, 경채	소방사	18세 이상 40세 이하	1983. 1. 1. ~ 2006. 12. 31.

#### ▷ 다음의 관계법령에 따른 응시자는 아래와 같이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함

-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6조에 따른 제대군인(사회복무요원 포함)
- 「병역법」제74조의2에 따라 복무를 마친 사람은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151조의2에 따라 3세의 범위에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(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사람 포함)
-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

복무기간	1년 미만	1년 이상∽2년 미만	2년 이상
연장기간	1세	2세	3세

## 5 신체검사 및 운전면허

#### 가. 신체검사

- 1) 신체조건표: 「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」 별표 5
- 2) 불합격기준: 「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」 별표 3
- ▶ 소방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「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」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▶ 신체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한 내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불합격 처리합니다.

#### 나. 운전면허요건

- 1) 공채분야 응시자와 경채분야 중 소방장 이하 응시자는 「도로교통법」 제80조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일 것
- 2) 필기시험일까지 보유해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유효할 것
  - ※ 운전면허증을 보유하지 않은 응시자는 필기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고 불합격으로 처리함

## 6 채용시험 가점

### 가. 대상자 및 비율

	=	구 분	가산비율	적용시기	비고			
лE	취임	<b>업지원대상자</b> <sup>1)</sup>	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10%	시험단계별	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은			
공통		<b> 사상자 등</b> <sup>2)</sup> , 의상자 본인이나 가족)	과목별 만점의 <b>3% 또는 5%</b>	적용	의사성사 등 기점은 1개만 적용			
공채	자격증 등 소지자 <sup>3)</sup>	소방업무관련분야 사무관리분야 한국어능력검정시험 외국어능력검정시험	최대 5% 이내에서 가산	최종 환산점수에 적용	동일한 분야에서 가점 인정 대상이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분야별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			

- 1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9조(취업지원대상자 등), 제31조(채용시험의 가점 등)
- 2) 「국가공무원법」제36조의2(채용시험의 가점),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제31조의2(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)
- 3) 「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」 별표6(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)

## 나. 가점 적용

- 1) '취업지원대상자', '의사상자 등' 가점과 '자격증 등 소지자' 가점은 각각 적용
- 2) '**자격증 등 소지자**' 가점은 필기·체력·서류전형·면접시험 및 신체 검사에 합격한 응시자에게 적용
- 3) '**자격증 등 소지자**' 가점의 자료 제출기한은 **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까지**로 하며 정지, 취소, 기간만료 등으로 유효하지 않으면 불인정

# Ⅱ. 원서접수

## 1 원서접수 방법

- 가. 접수기간: '24. 2. 19.(월) 10:00~2. 23.(금) 18:00
  - ※ 취소기한은 3. 27.(수) 18시까지(주말・공휴일 취소 가능)
- 나. 접수방법: 119고시(119gosi.kr)
  - 1) 원서접수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(우편, 팩스, 전자우편은 불가능)
  - 2) 거주지 제한은 없으나 응시지역과 응시분야는 중복접수가 불가함
  - 3)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주말·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접수 가능
  - 4) 원서접수를 취소하거나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으면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 포기로 처리함
    - ※ 119고시 접속 시간과 관계없이 원서접수 마감일 18시 이후부터는 접수 또는 등록정보 수정은 불가하며, 원서접수 마감일 21시까지 결제를 완료해야 함
  - 5) 응시자는 원서접수 완료 후 정확한 접수가 되었는지 119고시에서 확인할 것(119고시 → 마이페이지 → 원서제출내역)
  - 6) 원서접수 이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시험단계 마다 신분증, 응시표,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를 소지할 것
    - ※ 인적사항 변동자는 면접시험일부터 최종합격일 기간에 119고시에 증명자료 등록

## 2 응시수수료

계급	응시수수료
소방사	5,000원

- 가. 원서접수 취소기한 내에 접수를 취소한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으나 별도의 추가 비용은 반환되지 않음
  - ※ 휴대전화 결제, 카드 결제,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 시 처리 비용 발생
- 나. 응시원서 제출 당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 료를 면제함
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
#### ☑ 원서접수 유의사항

- 사진기준: 반명함(3cm×4cm), 사진 파일(JPG, GIF, PNG, DMP), 해상도(100DPI 이상)
- 사진등록: 응시자 본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진\* 및 **신분을 특정\*\*할 수 있는 사진(제복 등)** 등록 **시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** 
  - \* 배경이 있는 사진, 스냅사진,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, 얼굴이 잘려 나온 사진, 동물·식물 사진,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
  - \*\* 면접 시 블라인드 테스트로 前 직장 등 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등록 시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
- 응시자 개인정보 불일치(거짓 작성, 오기, 누락), 연락 불능, 응시자격 미충족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
- 채용시험 단계마다 같은 사진을 사용하므로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사진 교체 불가
- \* 원서접수 시 119고시에 등록한 사진은 면접시험까지 사용함

## 3 유의사항

- 가.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 및 자격가점, 복수국적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는 것에 반드시 동의할 것
- 나.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기재된 사항을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,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 수정은 불가함
- 다. 공채분야 응시자 중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면접시험 최종예정일('24. 6. 14.)까지 해당 자격증 등을 소지해야 함

#### 원서접수 시 준비사항

- (공 통) ① 사진 파일
- (해당자) ②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·의사상자 등록증 사본 ③ 자격(면허)증 또는 자격취득확인서
  - ④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⑤ 군복무확인서
  - ⑥ 소방관련학과: 졸업·성적·수료증명서, 재학증명서 中 1부
  - ⑦ 학위 응시자: 졸업증명서, 동일계통학과 증명서
- 라. 발급받은 지 오래된 자격증은 법령 개정으로 자격 명칭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현행 자격 명칭을 정확하게 확인할 것
  - ※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검증 사이트: 큐넷(www.g-net.or.kr/☎1644-8000)
- 마.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보훈부에 본인의 가산비율을 사전에 확인하시고, 의사상자 등(의사자 유족, 의상자 본인이나 가족)은 보건복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, 증명서류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
  - ※ 취업지원대상자 증명 발급: 정부24(www.gov.kr)
  - ※ 의사상자 등 확인: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☎ 044-202-3255
- 바. 가산점의 허위기재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가산점 등록 시 유의할 것

## 4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

### 가. 기준점수

구분	ТО	EFL	TOEIC	TEPS	G-TFI P	FLFX	TOSFI
	PBT	IBT	TOEIC	IEPS	G-TELP	ΓL <b>Γ</b> Λ	TOSEL
소방사	470점 이상	52점 이상	550점 이상	241점 이상	43점 이상 (level 2)	457점 이상	Advanced 510점 이상

### 나.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

- 1) (사전등록자) '21. 1. 1. 이후 국내에서 시행된 시험으로써 필기시험 예정일 전일(기준일)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 확인된 시험만 인정됨
- 2) (사전미등록자) '22. 3. 30. 이후 국내에서 시행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예정일 전일(기준일)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, 기준점수 이상 확인된 시험만 인정됨.
  - ※ 외국에서 응시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는 외국에서 응시한 토플 (TOEFL), 일본에서 응시한 토익(TOEIC), 베트남·미얀마에서 응시한 토셀 (TOSEL), 미국에서 응시한 지텔프(G-TELP)에 한하며, 필기시험 예정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 확인된 시험만 인정됨
- 3)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, 정부기관·민간회사·학교 등에서 승진·연수·입사·입학(졸업) 등의 특정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시·특별시험 등은 인정이 불가함
- 4)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(토익, 토플, 텝스, 지텔프)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함.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 또는 소방 청으로 사전등록하여야 함

## 다. 성적 제출방법

- 1)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제출 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 험명, 등록번호,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, 외 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영문성명을 기재하여야 함
- 2)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제출 마감일까지

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 등록기간('24. 3. 25.~3. 29.)에 119고시(119gosi.kr)를 통해 등록해야 함

- ※ 사전미등록자 중 성적 유효기간 만료 예정자는('24. 3. 29. ~ 4. 5.) 원서 작성 시 반드시 실시간 검증·등록을 선택하여 성적을 제출
- 3) 해당 시험기관에 확인하여 점수가 다르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적표 사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(성적 소명 대상자는 개별 통지), 연락 불능 또는 소명하지 않은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함
- 4) 플렉스(FLEX)는 국가 공인을 받은 [듣기 및 읽기」 평가만 해당함

##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및 확인

- 가. 기준등급: 3급(소방장 이하) 이상
- 나.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
  - 1)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만 인정함
  - 2) '20. 1. 1. 이후 시행된 시험으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일('24. 3. 29.) 까지 기준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등급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함

### 다. 성적 제출방법

- 1)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, 인증번호,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함
- 2) 시험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일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등록 기간 ('24. 3. 25.~3. 29.)에 반드시 등록(119고시)해야 함

## 6 한국사·영어능력검정시험 유의사항

- 가. 필기시험 예정일 전일('24. 3. 29.)까지 기준점수(등급)을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는 **필기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고 불합격으로 처리함**
- 나. 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(등급)는 필기시험에 반영하지 않음
- 다. 부정한 목적으로 성적을 거짓으로 표기하거나,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·변조할 때는 당해 시험의 정지·무효, 합격 취소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

# ☑ 공통 서류제출 안내

구분	제출서류 목록	제출대상	제출기간	제출방법
1	운전면허 정보 (1종 대형, 1종 보통)	필기시험 응시자 ※운전면허 취득 관련 서류를 성명, 주민번호, 보유 면허용		
2	군복무확인서 1부	필기시험 응시자  ※ 군복무 중인 자 및 응시연령 상한 연장 적용 대상자(1983.1.1.이전출생자)		
3	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			
4	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		원서접수 기간 '24. 2. 19.∽2. 23.	119고시
5	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(취업지원대상자만 해당)	필기시험 응시자	추가접수 기간 '24. 3. 25.∽3. 29.	
6	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 (의사상자등만 해당)			
7	<b>주민등록표 초본</b> (주민등록번호 13자리, 주소변동 사항, 병적사항 포함)	필기시험 합격자	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후 별도 서류제출 안내 공고 참고	
8	가족관계증명서	필기시험 합격자	(119고시, 시도 누리집에 등록된 공고문 참고)	공고문
9	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(인적사항, 사진, 압인 또는 계인 ,의사서명, 병원 직인 반드시 포함)	체력시험 합격자	체력시험 합격자 공고 시 안내에 따라 제출 (119고시, 시도 누리집에 등록된 공고문 참고)	참고
10	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 (경채 응시자는 해당없음)	체력시험 합격자	'24. 6. 3.∽6. 14.	119고시

<sup>※</sup> 원서접수 만료일까지 제출서류 준비가 완료된 응시자는 추가접수 기간과 관계없이 119고시에 등록

# ☑ 경채분야 서류제출 안내

		TAME CAI				
채용분야 		제출서류	제출시기	비고		
<b>공통사항</b> (공공경력 /	필수서류	•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		<ul><li>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</li><li> 군경력자는 군 경력증명서</li><li>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</li></ul>		
		<ul> <li>소득금액증명원 1부</li> <li>2023년 소득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로 확인하되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</li> </ul>		•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기간만 발급		
자격증+2년)		•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(해산 또는 폐업)		• 폐업회사 경력증빙자료		
	기타서류	•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1부		·		
	/۱-1/1π	• 근로계약서 1부		• 계약직(기간제,시간제) 경력자에 한함		
		• 사업자등록증 등 1부		• 사업체의 성격을 알 수 있을 것 예)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		
	화학	• 군경력증명서 1부		• 전역예정자(면접시험 예정일부터 6개월)는 복무확인서에 전역예정일 명시		
공공경력	심리상담	• 경력증명서 1부	필기시험 합격자	• 알리오, 클린아이 등에서 기관 인정여부 확인		
	<b>구조</b> (항공 포함)	· • (애벙대) 군경덕등병자 등수무대 목		• 계급별 임용일, 근무경력·부대, 징계, 교육입교 기록 등 상세 기재		
	• 성적증명서 1부 • 수료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•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•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	•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	(119고시, 시도	• 졸업자(고등학교, 2~4년제)		
학위			누리집에 등록된 공고문 참고)	• 학점이수자(4년제)		
			•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는 유사학과 범위 해당자만 제출			
자격증 + 2년 경력	구급 (항공 포함) 화학  소방(자격)  건축 정보통신 (전산 포함)  안전관리(화재조사)  소방정(기관사)  소방정(항해사)  자동차운전 자동차정비			<ul><li>※ 자동차운전분야 軍 경력자는 '군경력증명서' 및 '운전경력확인서'</li><li>그 외 경력은 '경력증명서',</li></ul>		
				'운전경력증명서', '자동차		
		자격(면허)증 1부      경력증명서 등 1부		등록증'제출  ※ 자동차정비분야는 경력증명서 및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제출		
		. 04004 0 IT		※ 소방정 분야는 '경력증명서', '승무경력증명서', '선원수첩' 제출		
				※ 자격(면허) 기준은 '2024년 소방공무원 응시자격기준' 참고		

※ 응시자격 검증을 위하여 상기 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이 있어야 함. 연락 불능 또는 보완 요구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

# Ⅲ. 시험절차

# 1 1단계: 필기시험

가. 일 시: '24. 3. 30.(토) 10:00

※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 완료(시간 초과 시 시험장 입실 불가)

나. 장소공고: '24. 3. 14.(목) 14:00

1) 응시표 출력: 119고시 → 마이페이지 → 응시표 출력

2) 응시자 준비물: 응시표, 신분증, 필기도구(컴퓨터용 흑색사인펜)

**다. 배** 점: 과목당 100점 만점

**라. 시험과목**: 공채 3과목 75문항 / 경채 2과목 65문항

구분	시험시간	시험과목		
공채	10:00〜11:15 (75분)	소방학개론(25문항), <b>소방관계법규(25문항), 행정법총론(25문</b>		
	10:00〜11:05 (65분)	일반	소방학개론(25문항), <b>소방관계법규(40문항</b> )	
경채		구급	소방학개론(25문항), <b>응급처치학개론(40문항</b> )	
		화학	소방학개론(25문항), <b>화학개론(40문항)</b>	
		정보통신	소방학개론(25문항), <b>컴퓨터일반(40문항)</b>	

- ※ (소방관계법규 출제범위) 「소방기본법」, 「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」,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,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위험물안전 관리법」과 각 법률의 하위법령(해당 법령문제는 필기시험일('24.3.30.) 현재 시행 중인 법령에서 출제)
- ※ 건축, 구조, 소방(소방관련학과), 소방정, 심리상담, 안전관리(화재조사), 자동차정비, 자동차운전, 전기 등은 일반분야 시험과목 응시

## 1-1 출제문제 공개 및 이의제기

가. 답안공개: '24. 3. 30.(토) 14:00 / 119고시

나. 이의제기: '24. 3. 30.(토) 14:00~3. 31.(일) 24:00

※ 문의 기간이 경과한 후 문제문의는 불가하며 전화 문의는 받지 않음

1) 방법: 119고시에 필기시험 시험문제 문의서 제출

※ 119고시 → 문제/정답 → 문제/정답 이의제기

2) 내용: 필기시험 출제문제 관련(오류, 복수정답, 정답없음 등)

## **1-2** 채점 및 이의제기

## 가. 성적공개 및 이의제기

1) 성적공개: '24. 4. 22.(월) 14:00~

※ 119고시 → 마이페이지 → 합격/성적조회

2) 이의제기: '24. 4. 22.(월) 14:00~24:00

가) 방 법: 119고시에서 응시자 필기시험 점수 및 가점 조회

나) 이의제기: 로그인 → 마이페이지 → 합격/성적조회 → 이의제기 → 이의 제기 과목 선택/기타 의견 서술 → 저장/제출

샹	성적 이의제기 신청				
구분	이의제기 과목 선택				
공채	소방학개론☑소방관계법규□ 행정법총론□				
경채	소방학개론□ 소방관계법규☑ 응급처치학개론□ 화학개론□ 컴퓨터일반□				
기타	기타 내용 서술 기재				
	저장/제출				

나. 이의제기 답변: '24. 4. 24.(수)까지

# 1-3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

## 가. 합격자 공고

1) 공고일시: '24. 4. 25.(목) 14:00

2) 공고방법: 소방청 및 119고시 누리집 게시

나. 합격자 결정: 필기시험 매 과목 40% 이상, 전 과목 총점의 60% 이상의 득점자 중 아래의 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

분야	공	내	경채		
포막	선발예정인원	합격자 배수	선발예정인원	합격자 배수	
	1∽10명	3배수	1명	3명	
	11∽20명 2.	2 上川人	2명	6명	
필기시험		2.5배수	3명	8명	
합격자 배수	21〜50명	2배수	4명	9명	
			5명	10명	
	51명 이상	1.5배수	6∽50명	1.8배수	
	기당 이상 1.5백		51명 이상	1.5배수	

- 다. 합격자 배수: 필기시험 합격자 배수 인원은 소수점 이하에서 올림함
- 라. **동점자 처리**: 채용분야별 동점자가 있으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 하더라도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함

## 2 2단계: 체력시험

- 가. 시험기간: '24. 4. 29.(월)~5. 17.(금)
- 나. 장소공고: '24. 4. 25.(목) 14:00 / 119고시
- 다. 준 비 물: 응시표, 신분증, 상·하의 운동복, 운동화
- 라. 대 상 자: 필기시험 합격자
- 마. 시험종목: 악력, 배근력,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, 제자리멀리뛰기, 윗몸일으키기, 왕복오래달리기
- 바. 측정방법: 「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」별표4 적용
- 사. 이의제기: 시험관리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결정
  - ※ 체력시험 채점표에 응시자가 본인 점수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시험운영
- 아. 합격자 결정: 6종목 총점(60점)의 50%(30점) 이상을 득점한 자

## 2-1 도핑테스트

- 가. 채취일시: 체력시험 종료 후 채취
- 나. 채취장소: 체력시험 장소
- 다. 채취대상: 응시인원의 2~5%범위에서 무작위 선정(소수점 절사, 최소 1명 이상 시행)
- 라. 채취시료: 소변 90ml 이상
- 마. 시료검사: 시료 봉인 후 전문검사기관 의뢰
- 바. 동의서 징구: 체력시험 응시자 등록 시 도핑테스트 동의서 징구
- 사. 테스트 결과: 비정상(양성)으로 확인된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후 부정행위자 조치 또는 면책신청 가능
  - ※ 이의제기 시에는 시험실시기관에서 치료목적 사용 면책위원회(3인 이상)를 운영 하여 금지약물 면책 여부 결정, 양성 판정 시 선발시험 최종합격은 취소함

## 2-2 체력시험 합격자 공고

- 가. 공고일시: '24. 5. 23.(목) 14:00
- 나. 공고장소: 119고시
- 다. 합격기준: 6종목 총점(60점)의 50%(30점) 이상을 득점한 자

## 3단계: 서류전형 / 신체검사

# 3-1 서류전형

### 가. 서류제출

- 1) 일 자: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일(소방청 및 시도 별도 공고문 참고)
- 2) 제출대상: 필기시험 합격자
- 3) 제출방법: 119고시 온라인 제출

### 나. 서류전형

- 1) 확인기간: '24. 4. 29.(월)~'24. 7. 12.(금)
- 2) 확인내용: 응시자격, 근무경력증명서, 운전면허증 등 확인
- 3) 위원구성: 2명 이상으로 시도별 구성 후 추진 ※ 외부위원 1/2이상
- 4) 서류확인: 행정정보공동활용 또는 서류 발급기관에 진위 확인 등

## 3-2 신체검사

- 가. 제출일시: 별도 공고(소방청, 시도 소방본부)
- 나. 대 상 자: 체력시험 합격자
- 다. 검사방법: 소방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기한 내 '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' 제출
  - ※ 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 등 재검사 사유가 발생한 응시자는 면접시험일 전일까지 확인된 최종 신체검사서 제출
- 라. 합격기준: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
- 마. 합격발표: 최종합격자 공고 시 발표

#### ☑ 신체검사 유의사항

- ▶ 약물검사(TBPE) 시 금식은 필요하지 않으나 에페드린 성분이 포함된 약(감기약, 천식약 등) 이나 카페인 과다 복용 시(녹차, 홍차, 피로 회복제 등) 마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양성이 나올 수 있음. 이 경우 재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검사 전 약물 및 카페인 섭취에 주의 필요
- ▶ '색각' 이상자는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(색각경) 검사를 받아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시험 에 응시
- ▶ 색약 교정렌즈 등 부정한 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당해 시험에 불합격 처리됨은 물론 부정행위자로 처리
- ▶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1년임(기준일: 최종시험예정일)
  - ※ 약물검사(TBPE)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응시자는 추가검사를 받아야 함

## 4단계: 종합적성검사 / 면접시험

# 4-1 종합적성검사

가. 시험일자: '24. 6. 1.(토)

나. 시험공고: '24. 5. 23.(목) 14:00 / 119고시

다. 검사대상: 체력시험 합격자

※ 응시자 준비물: 응시표, 신분증, 필기도구

라. 검사방법: 시·도별 운영

## 4-2 면접시험

가. 시험일자: '24. 6. 10.(월)~6. 14.(금)

나. 시험공고: '24. 5. 23.(목) 14:00 / 119고시

다. 시험대상: 체력시험 합격자

라. 면접방법: 소방청 주관 통합시험

구분	평정요소 (5개 분야 50점)		А	В	С	D
발표면접	① 문제해결능력(10점)		8	6	4	2
	② 의사소통능력(10점)	10	8	6	4	2
인성면접	③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관(10점)		8	6	4	2
	④ 팀워크 및 협업능력(10점)	10	8	6	4	2
	⑤ 침착성 및 책임감(10점)	10	8	6	4	2

※ 응시자 준비물: 응시표, 신분증, 필기도구

## 마. 합격자 결정

- 1)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%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
- 2) 다만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해 40%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

## 5 최종합격자

## 5-1 최종합격자 공고

가. 공고일시: '24. 7. 19.(금) 14:00

나. 공고방법: 119고시

다. 시험단계별 성적 반영비율

채용분야	시험방법	반영비율
공채	필기시험 + 체력시험 + 면접시험	50% + 25% + 25%
경채	필기시험 + 체력시험 + 면접시험	50% + 25% + 25%

#### 라. 합격증명서 발급

1) 발급일자: '24. 7. 19.(금)~3년간

2) 발급대상: 최종합격자 중 희망자

3) 발급방법: 119고시에서 직접 발급(출력)

## 5-2 최종합격자 결정

## 가. 최종합격자 결정

- 1) 「소방공무원임용령」제46조에 따라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시험단계별 취득성적에 반영비율을 적용한 합산점수 (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)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
- 2)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으로 함

## 나. 추가 합격자 결정

- 1) 임용권자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 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- 2) 임용권자는 최종합격자가 「소방공무원임용령」 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합격자의 다음 순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「소방공무원임용령」 제4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## 5-3 최종합격자 교육

- 가. 교육장소: 소방학교 및 교육대
- 나. 교육기간: 입교일부터 약 6개월
  - ※ 교육기관 입교 시기는 시도마다 다를 수 있음
- 다. 입교유예: 병역의무의 수행, 부상, 질병의 치료, 임신·출산·육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훈련을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훈련을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음

# ₩ 세부 안내사항

# 1 공통사항

가.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#### ☑ 신분증 인정 등 유의사항

- ▶ 인 정: 주민등록증,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, 운전면허증, 기간만료 전 여권(주민등록 번호가 전체 표기된 신분증만 인정)
- ▶ 불인정: 학생증, 자격수첩,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, 공무원증,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, 신분증 사진
- ※ 응시표 출력 후 모든 시험절차에 지참하여야 합니다.
- 나. 응시자는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에서 지정한 시험장소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(시험장)에서는 응시가 불가합니다.
- 다. 응시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시간까지 시험장에 입장해야 하며(이후 입장불가), 공고된 시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은 사람은 응시 포기로 간주합니다.

#### ☑ 시험장 폐쇄 시간 기준(예시)

- ▶ 시간 기준: 10:00 시험은 08:20에 개방하여 09:30:00까지 입장 가능 09:30:01부터 시험실시 건물 주 출입구 폐쇄
- ▶ 입구 기준: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한 출입구 기준
- 라. 시험공고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119고시에 공고합니다. 공고내용 및 공지사항(시험일시, 장소 등)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마. 모든 시험은 우천, 폭설,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하며,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험장소 등을 공지합니다.

- 바. 시험관련 휴대전화 문자 안내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니 응시자는 반드시 공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사. 응시자는 시험장 물품 등 파손,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, 소지품 분실 등 시험장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.

## 2 원서접수

- 가. 시험원서 및 제출서류에 거짓 사진 등록 및 작성, 오기, 누락, 연락 불능, 자격 입증서류 미비, 개인정보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, 제출된 모든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습니다.
  - ※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자 정보를 등록한 사람은 향후 5년간 시험응시를 제한할 수 있음
- 나. 응시자가 원서접수 시 제출한 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, 응시원서 접수 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다.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가 올바르게 되었는지 119고시에서 응시자 본인이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 (연락처는 응시자 휴대전화 번호로 작성)
- 라. 시험실시권자는 서류를 제출(파일 등록)한 응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마.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 및 가점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반드시 동의해야 합니다.
- 바.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기재된 사항을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 수정은 불가합니다.
- 사. 발급받은 지 오래된 자격증은 법령 개정으로 자격 명칭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현행 자격 명칭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.
- 아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상자 등의 가점은 만점의 5%, 3%를 가산하며 선발예정인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으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만점의 10%, 5%를 가산하며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으니 원서접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☑ 원서접수 전 응시자 준비사항

- ① 취업지원대상자, 의사상자 등록증(해당자)
  - 「응시자가 의사상자 본인인 경우: 의사상자 등록증
  - L 응시자가 의사상자 본인이 아닌 경우: 의사상자 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
-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(해당자)
- 자. 가산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가산점 등록 시 유의해야 합니다.

## 3 필기시험

가.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(시험장소 및 시험실)에 착석하여 감독관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.

#### ☑ 시험장 유의사항

- ▶ 응시자는 시험장의 위치, 교통편, 이동 소요 시간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, 시험 전날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.
- ▶ 시험장은 정문만 개방하고 출입 통제는 시험장 건물의 주 출입구 통과시간 기준입니다.
- ▶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이 불가합니다.
- 나. 원서접수 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원의 개명판결문을 지참하여 필기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다. 개인별 성적은 답안지 전산 판독 결과에 따르며, 답안지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 하므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반영되지 않습니다.
- 라. 답안은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"●"로 표기해야 하며,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때는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.
  - 1) 표기한 답안을 수정할 때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 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. (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)
  - 2)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 또는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발생하는 판독 결과 등에 대한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☑ 채점오류(귀책 사유) 사례

- ▶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
- ▶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
- ▶ 답안지 여백 낙서, 훼손 등으로 채점 불가한 경우
- ▶ 예비표기 하여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
- ▶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이외 필기구(연필, 샤프, 적색펜 등) 사용한 경우
- ▶ 불량 또는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사용으로 마킹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
- ▶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( ▮▮ ▮▮▮)를 훼손한 경우
- ▶ 수정테이프 사용 후 번짐. 뜯김 등이 발생한 경우

<보기> 올바른 표기: ● 잘못된 표기: ○ ○ ● ● ● ● ● ② ③

- 마. 답안지는 본인의 응시표를 확인 후 직접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- 1) (필적감정용 기재) 예시문과 동일한 내용을 본인의 필적으로 직접 작성해야합니다.
  - 2) (자필성명) 본인의 한글 성명을 정자로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.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불이익(당해시험 무효 처리 등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- 3) (교체답안지 작성) 답안지를 교체하면 반드시 필적감정용 기재란, 자필성명, 응시번호, 생년월일 등을 빠짐없이 작성(표기)해야 하며 작성한 답안지는 1인 1매만 유효합니다.
- 바.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 모든 통신기기나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문제지 배부 후 발견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.
  - 1) 휴대전화, 디지털카메라, MP3 플레이어, 전자사전, 카메라펜, 카메라 안경, 라디오,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, 무선호출기, PDA, 전자계산기, 전산기기, 테블릿 PC, 스마트기기(스마트워치 등), 전자담배, 통신(블루투스)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, 통신・결제 기능(블루투스 등)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(LCD, LED 등)가 있는 시계
  - 2) 통신기기나 전자기기를 소지한 응시자는 시험실시 전 전원을 끈(off) 후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여야 하며,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문제지 배부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.
- 사. 문제지 배부 후 시험 시작 전에 문제지를 열람하는 행위,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아. 응시자는 문제지의 과목순서대로 답안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.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때도 답안지에 기재된 과목순서대로 채점이 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자.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차.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이뇨작용을

일으키는 음료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※ 배탈·설사 등 불가피하게 시험을 중단할 때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은 불가하며,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.
- 카. 시험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시험 부정행위자는 「소방공무원임용령」제51조제1항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등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타.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제51조제2항에 따라 답안지에 성명, 생년월일,응시번호, 시험감독관 서명, 필적 감정용 기재란을 기재하지 않아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무효답안으로 처리합니다.

#### ☑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는 사례

- ▶ 부정행위자 조치: 「소방공무원임용령」제51조 적용
- ▶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- ▶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- ▶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- ▶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

#### ■ 무효 처리기준으로 공고한 행위

- 시험지(문제지, 답안지)가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에 입실하는 행위
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대화하는 행위
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
-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
-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-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(공고문에서 별도 시험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허용함)
- 시험 중에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의 앞면 또는 뒷면에 시험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
-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

## 4 체력시험

- 가.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한 시간까지 공고된 장소에서 등록(핸드링 등)한 후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, 등록 시간 종료 후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.
- 나.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된 방법을 사용하여 부정으로 합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시행합니다.
  - ※ 체력시험 응시자 중 2~5%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도핑테스트 실시(최소 1명 실시)
- 다. 체력시험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된 방법을 사용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.
- 라.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(양성)으로 확인되면 체력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마.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체력시험 장면을 촬영할 수 없으며, 응시자가 아닌 사람은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.
- 바. 체력시험 전 또는 실시 중에 응시자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시험을 연기하거나 추가 시행하지 않습니다. 시험실시기관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책임지지 않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(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졌을 때 포함) 그 해당 종목에만 측정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. 재시험은 시험 당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시험본부에서 판단에 따라 시행합니다.
- 사. 체력시험 중에는 판정관이나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, 허가 없이 자리를 떠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추가 시험을 시행하지 않습니다.
  - ※ 부상 등의 사유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 종목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이전까지 취득한 점수가 인정됩니다.
- 아. 체력시험 응시 중 바닥 미끄럼 등에 주의하시고 체력시험에 영향을 주는 개인 보조용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#### ☑ 보조장비 착용 등 시험 유의사항

- ▶ 스포츠 테이핑, 상처 보호용 밴드는 목적에 맞는 용도로만 사용 가능
- ▶ 탄산마그네슘 가루, 붕대, 복대 등 보호대 사용 금지
- ▶ 악력, 배근력 종목에서는 시험 운영 기관에서 제공하는 반 코팅 장갑 사용 가능
- ▶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복장(후드티 등) 및 용모(긴 손톱, 긴 머리)는 시험 운영과정에서 제재 예정 - 긴 머리는 머리 뒤쪽으로 묶어서 체력측정 기기 등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할 것
- ▶ 물·음료는 개인 지참(물·음료 이외의 다른 액체류 제품은 섭취 금지)
  - ◇ 「소방공무원 임용령」제51조제2항제4호"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 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"에 해당
- 자. 체력시험 장비 제조사, 종류 등은 시험 전에 공개하지 않으며, 체력시험 운영(측정방법, 실격기준 등) 교육은 시험 시작 전 응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교육을 받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  - ▶ 악력,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 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.
  - ▶ 배근력, 제자리멀리뛰기 측정 시,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.
- 차. 시험실시기관에서는 체력시험 판정 보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며, 응시자가 체력시험 등록 시 체력시험 영상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카. 체력시험 중 촬영되는 동영상은 시험판정을 위한 보조자료로 활용하며 응시자에게는 **비공개**로 운영합니다.
  - ▶ 체력시험장 입장 시 영상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, 종목별 시험 종료 후 폐기함
  - ▶ 종목별 측정 시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종목을 실시한 후 즉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. 영상 촬영 판독 결과에 따라 이의제기 반영 여부가 결정되며 이후 이의제기는 불가함
  - ▶ 촬영된 영상으로 판정이 어렵거나, 장비의 고장 등으로 촬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종목 판정관의 최초 판정 결과에 따름
- 타. 긴장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체력시험 응시로 각종 부상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체력시험 시행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. 체력시험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하여 시험실시기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- 가. 신체검사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시험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소방공무원 선발시험에 불합격 처리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까지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소방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'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'를 실시 하고 검사결과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.
- ※ 약물검사(TBPE) 결과를 포함하지 않은 신체검사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다. 신체검사서는 「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」로 제출해야 하며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」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라 응시자는 응시표,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1), 반명함판(3cm×4cm) 컬러사진 1~2매(병원마다 다름), 신체검사 수수료(병원마다 다름)를 준비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- 마. 색약교정렌즈 등 부정한 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람은 당해 시험에 불합격 처리됨은 물론 부정행위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- 바. 신체검사 결과는 전산에 기록되어야 하며, 수기로 작성한 신체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 특히 청력, 혈압, 시력은 반드시 수치로 작성되어야 합니다.
- 사. 신체검사서는 반드시 검사를 시행한 지정병원의 압인, 계인 처리, 담당의 사명(인), 지정병원 의료기관장 직인 날인 등의 방법으로 증명해야 합니다.
- 아. 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된 사람은 별도 공고일까지 정밀검사 또는 재검사 결과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정밀검사 또는 재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자.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하며, 재검사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차. 신체검사서 제출 방법 및 제출기한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## 6 종합적성검사 및 서류제출

- 가. 종합적성검사 관련 검사일시, 검사장소, 검사방법, 준비물, 진행방법 등은 별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제출서류 확인 결과 거짓 사실로 판명되면 당해 시험을 정지 및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.
- 다.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(담당자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)이 있어야 하며,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
## 7 면접시험

- 가.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한 시간까지 공고된 시험장소에 입장해야 하며, 등록 시간 종료 후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.
- 나. 면접시험 세부 사항은 시험 당일에 교육하며 응시자의 부주의로 교육을 받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다. 시험장 물품의 파손·훼손 등의 경우 응시자 본인이 변상해야 하며, 시험장 전체는 금연 구역으로 흡연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
- 라. 시험 중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에서는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 - ※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장하기 전 시험관리관에게 개인 소지품을 제출해야 합니다.
- 마.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면접시험 장면을 촬영할 수 없으며, 면접시험 중 전자·통신장비 소지자(휴대전화, 스마트워치 등)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합니다.
- 바. 면접시험 중에는 시험관리관과 면접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, 허가 없이 자리를 떠나는 사유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응시자는 추가 시험을 시행하지 않습니다.
- 사. 원서접수 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응시원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면접시험 등록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. 면접시험에 대리 시험을 의뢰·응시한 사람 등 부정행위자는 「소방 공무원임용령」제51조제1항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등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자. 면접시험 중 시험관리관과 면접위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사람은 「소방 공무원임용령」제51조제2항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 등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## 8 최종합격자(교육훈련 등)

- 가.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되면 합격 취소 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.
- 나. 최종합격자는 소방학교에서 약 6개월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선발 예정 계급으로 임용합니다.

#### ※ 신임교육 입교 일정 및 임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. 소방학교 교육 중 피복 및 숙식을 제공하고 매월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%를 지급합니다.
- 라.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임용된 사람은 채용분야에서 필수보직기간 에는 다른 부서로 전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마. 병역의무의 수행, 부상, 질병의 치료, 임신·출산·육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훈련을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훈련을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.

# V. 연락처 및 주소

시도별	전화번호	주소
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	044-205-7287~94	세종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(http://119gosi.kr)
서울소방학교 인재채용팀	02-2106-3621~3	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-21 (https://fire.seoul.go.kr/school)
부산 소방행정과	051-760-3023	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216 (https://119.busan.go.kr/119examinfo)
대구 소방행정과	053-350-4011	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 49길 30, 2층 소방행정과 (http://www.daegu.go.kr/119)
인천 소방행정과	032-870-3012~4	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90 (https://www.incheon.go.kr/119/index)
광주 소방행정과	062-613-8022	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(https://www.gwangju.go.kr/)
대전 소방행정과	042-270-6193	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(https://www.daejeon.go.kr/dj119)
울산 소방행정과	052-229-4523	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, 2별관 3층 소방행정과 (https://fire.ulsan.go.kr/)
세종 소방행정과	044-300-8013	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, 618호 (https://www.sejong.go.kr/fire/index.do)
경기도 인사담당관	031-230-2923~7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86 별관4층 인사담당관 (https://119.gg.go.kr/)
강원 소방행정과	033-249-5104, 5114	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, 강원도청 신관1층 (https://fire.gwd.go.kr/fire/partici/parti_recruitment)
충북 소방행정과	043-220-4824	충북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1로 57 (https://cb119.chungbuk.go.kr)
충남 소방행정과	041-635-5565	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(http://www.cn119.go.kr/index.cn119)
전북 소방행정과	063-280-3842	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, 전북도청 16층 (https://www.jeonbuk.go.kr/index.jeonbuk) (https://www.sobang.kr/index.sobang)
전남 소방교육과	061-860-4726	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화우산길 212-43 (https://www.jnsobang.go.kr/jnsobang/commu/test/)
경북 소방행정과	054-880-6155 054-880-6152	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(https://www.gb.go.kr/Main/open_contents/section/exam_i nfo/index.html)
경남 소방행정과	055-211-5325	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(https://www.gyeongnam.go.kr/index.gyeong)
제주 소방정책과	064-710-3514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9길 22 (http://www.jeju.go.kr/119/notice/exam.htm)
창원 소방정책과	055-548-9316	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(https://www.changwon.go.kr/119/)

※ 원서접수 기간 시스템오류 문의 콜센터: SE코리아, 070-4290-9611



■ 공고문은 119고시(https://119gosi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